

요약

일본은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와 변화하는 생애주기·가족 구조에 맞춰 공·사적 연금제도를 개편해 노후생활의 안정성과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연금제도 개정법을 채택함. 주요 개정 내용은 후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재직 중 노령연금 지급 정지 기준금액 상향, 유족후생연금의 성별 형평성 강화와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DeCo)의 가입연령 확대 및 납부 한도 인상 등임

- 일본은 2025년 6월 13일 ‘사회경제 변화를 근거로 한 연금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 연금법 등 개정법’을 채택하여, 공·사적 연금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함¹⁾
- 일본 정부는 연금 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경제 구조에 대응하고, 노동 중립적인 연금제도를 구축하여 현재와 미래의 수급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iDeCo 및 기업연금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²⁾
 -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고령층이 계속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고령층의 지속적인 노동 참여와 소득 다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짐
 - 비정규직·파트타임·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맞벌이·무자녀·1인 가구 등 가족구조도 다양해지면서 공적연금의 고용 형태 및 성별 격차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iDeCo는 20세~65세가 가입할 수 있고, 개인 납입 금액이 전액 소득 공제되지만, 납입 한도가 낮아 충분한 절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해 개인이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노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
- 공적연금의 주요 개정 사항은 후생연금 가입 대상의 확대, 재직노령연금제도의 재검토, 유족후생연금 성별 형평성 강화, 고소득자의 보험료·연금 산정 기준인 표준보수월액 상한 인상 등임(〈표 1〉 참조)
 - 후생연금 가입 조건인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요건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월 8.8만엔 이상의 소득 요건이 3년 내 폐지되어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단기간 노동자도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 더 많은 사람이 노후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기업규모 요건은 2027년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2035년 10월에는 근로자 10명 이하 기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재직노령연금이란 일하면서 노령후생연금을 받는 사람이 대상인 제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2026년 4월부터 노령후생연금 지급 정지 기준이 되는 월소득이 현행 50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인상됨
 - 2028년부터는 남녀가 동일한 기준으로 유족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

1)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金制度改正法が成立しました”(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7284_00017.html)

2) https://www.mhlw.go.jp/content/12500000/001496971.pdf

- 고소득자의 표준보수월액 상한을 2027년 9월부터 3년에 걸쳐 75만 엔으로 인상함으로써 고소득자의 부담은 증가하지만, 장래 연금액도 함께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이 동시에 제고됨

〈표 1〉 일본 공적 연금 개정 주요 내용(2025년 6월 13일 기준)

구분	현행	개정
후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 수 51인 이상 월 8.8만 엔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 수 단계적 완화(2035년 10월: 10인 이하) 월 8.8만 엔 이상 기준 폐지 주 20시간 이상 근무
재직노령연금 기준액 증액	월 급여 50만 엔	월 급여 62만 엔
유족후생연금 성별 형평성 강화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60세 미만 유족: 여성만 연금 지급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60세 미만 유족: 남녀 모두 5년간 연금 지급
고소득자의 표준보수월액 상한 증액	65만 엔	68만 엔(2027년), 71만 엔(2028년), 75만 엔(2029년)

자료: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金制度改正法が成立しました”(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7284_00017.html)

○ 사적연금의 개정은 iDeCo의 가입가능연령 연장 및 상한액 증액이며, 기업연금 중 DC형에서 근로자의 추가 납입 한도 규제를 완화함(〈표 2〉 참조)³⁾

- iDeCo 가입가능연령은 현재 회사원이나 공무원은 65세 미만, 자영업자 등은 60세 미만까지였으나, 2027년부터는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70세 미만까지 가입할 수 있음
 -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 중 iDeCo를 활용해 노후 자산 형성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령기초연금 또는 iDeCo 노령급부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 iDeCo 신규 가입·계속 납입이 모두 가능함
- iDeCo는 2027년부터 직종 및 연금 유형별로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월 납입 한도액이 확대되어 노후 자산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 됨
- 기업형 DC의 가입자가 회사 부담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매칭 납입금에 대한 규제인 ‘사업주 부담금 한도를 넘을 수 없는 제한’을 2026년 4월에 폐지하여 납입 한도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다만, 회사부담금과 추가 납입 금액의 총합은 월 5.5만 엔으로 제한되며, 인상 후에는 6.2만 엔으로 변경됨

〈표 2〉 일본 iDeCo 월 납입 한도 증액(2025년 6월 13일 기준)

구분	현행	개정
자영업자·학생 등(국민연금 1호)	6.8만 엔	7.5만 엔
기업연금이 없는 회사원(제2호)	2.3만 엔	6.2만 엔
기업연금이 있는 회사원(제2호)	2만 엔 (회사부담금 포함 총한도 5.5만 엔)	회사부담금을 포함 총한도 6.2만 엔 (※ 기업 DC형 상한 폐지)
공무원(제2호)	2만 엔	6.2만 엔에서 공적 부담금을 뺀 금액
전업주부(남편이 회사원 등, 제3호)	2.3만 엔	2.3만 엔
연령 연장 대상자	-	6.2만 엔(제2호와 동일)

자료: 日本經濟新聞(2025. 9. 6.), “iDeCo増額で総投資額NISA超えも 「給与減額年金」より有利”

3) 厚生労働省(2024. 12. 26.), “令和7年度税制改正に関する参考資料”